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첨부서류

목 차

I . 과제제안요구서(RFP) 첨부서류 제출안내	1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
II. 첨부서류 양식	
1. (첨부1)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3
2. (첨부2)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5
3. (첨부3) 해당국가 규제기관 IND 승인서(또는 신청서)	6
4. (첨부4)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7
5. (첨부5)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9
6. (첨부6)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1억 원 이상)	11
7. (첨부7)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18
8. (첨부8) 기관장 지원 확약서	20
9. (첨부9)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21
10. (첨부10)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22
11. (첨부11)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	24
12. (첨부12) (외부기술 도입한 경우) 권리관계 증빙자료	25
13. (첨부13) 총괄운영지원 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26
14. (첨부14) 연구윤리·청렴 보안서약서	27
15. (첨부1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28
16. (첨부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30
17. (첨부17)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31

I. 과제제안요구서(RFP) 첨부서류 제출안내

<과제제안요구서(RFP)별 첨부서류 제출안내>

(● : 필수제출, ◐ : 해당시 제출, ▲ : 선정 이후 (협약용)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제출)

* 3천만원 이상 장비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첨부 5번 또는 6번 필수제출 (공고안내서 참고)

구분	첨부서류																
	첨부1	첨부2	첨부3	첨부4	첨부5	첨부6	첨부7	첨부8	첨부9	첨부10	첨부11	첨부12	첨부13	첨부14	첨부15	첨부16	첨부17
과제제안요구서(RFP)																	
1.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RFP별 필수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며, 이외 서류는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구분	첨부서류	제출확인
첨부1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협약서 ※ 기업이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제출	<input type="checkbox"/>
첨부2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제출	<input type="checkbox"/>
첨부3	○ 해당국가 규제기관 IND 승인서(또는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첨부4	○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첨부5	○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구축 시 필수제출	<input type="checkbox"/>
첨부6	○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 ※ 1억 원 이상 장비 구축 시 필수제출	<input type="checkbox"/>
첨부7	○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input type="checkbox"/>
첨부8	○ 기관장 지원 협약서	<input type="checkbox"/>
첨부9	○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별 각각 작성하여 제출	<input type="checkbox"/>
첨부10	○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 필수제출	<input type="checkbox"/>
첨부11	○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서	<input type="checkbox"/>
첨부12	○ (외부기술 도입한 경우) 권리관계 증빙자료	<input type="checkbox"/>
첨부13	○ 총괄운영지원 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첨부1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input type="checkbox"/>
첨부15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첨부16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기업참여시 필수제출	<input type="checkbox"/>
첨부17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기업참여시 필수제출	<input type="checkbox"/>

II. 첨부서류 양식

첨부1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스캔본 첨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

사업명(RFP)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단위: 천원)

구분(해당란에 체크)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합계
<input type="checkbox"/>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기관 외 지원금	현물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합계					

※ 단, 비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예외 대상으로 구분(현물 100% 집계 가능)

본 기관에서는 상기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상기와 같이 본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기술료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부담금지원기관명 :

기관부담금지원기관장 :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해당 RFP 기준)> * 제출시 삭제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75% 이하	25% 이상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frac{\text{기관부담연구개발비}}{\text{(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times 100$		

첨부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스캔본 첨부)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제출

※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함

첨부3**해당국가 규제기관 IND 승인서(또는 신청서) (스캔본 첨부)**

※ 승인서 필수제출인 경우는 신청서가 아닌 승인서를 첨부(사업별 RFP를 참고하여 제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항목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명	점수
1. 가점 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감점 사항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가감점(가점-감점) 합계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하여 1부만 작성

가점사항, 가감점 각 상한 및 가감점 합계 상한, 적용대상(주관/공동), 가감점 적용 범위(횟수, 단계)는 부처별로 지정 가능
(단, 감점사항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상기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별첨

가점 및 감점 사항 증빙 (스캔본 첨부)

가점 및 감점 사항 증빙

공문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스캔본 첨부

※ 단, 최종평가 가점을 신청한 경우 전산에서 확인 예정이므로 증빙 불필요

첨부5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 필수) (해당하는 경우 작성)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시설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RFP명							
연구개발과제명							
시설 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 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시설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시설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장비인지 기술												
시설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시설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시설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설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시설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시설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시설장비 가격, 타 제작사 시설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 (신규, 기존)</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채용예정자는 OOO)</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속 부서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th> <th style="text-align: center;">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th> <th style="text-align: center;">담당시설장비수 (신청시설장비 포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 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시설장비수 (신청시설장비 포함)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 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시설장비수 (신청시설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첨부6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 필수) (해당하는 경우 작성)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I. 사업 개요

사업 일반사항

세부분야				
RFP명				
연구개발과제명				
회 계 명 (해당란에 '○'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해당란에 '○' 표시)	순수연구개발	연구시설·장비구축	연구기관지원사업	기 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관리번호	연구개발과제명	'00년 연구비		전체 연구개발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년차 (0차년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과제별 연구책임자(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00년 연구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1							
2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사업명 예시
가상환자·가상병원 기반의 의료기술개발사업	가상환경기반 병원운영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
	가상환경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지원
약물 전달 치료기술 개발	역물 전달기기 활용 기술개발
	약물 전달 소재 개발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II.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연구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시설·장비명	총 구축비용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운
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연구시설·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는 제외
-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 구축신청 연구시설·장비 목록상의 연구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00]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별첨-00”에서 별첨번호 00는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의“구축신청 연구시설·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 분류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소재	정보전자통신
분류2(연구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 (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표시)	주력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융합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표시)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단독활용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시설·장비를 도출하고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	------------------------	--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자체장비심의위원회’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 표시)	구 매	리 스 ¹⁾	렌 탈 ²⁾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 (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연구시설·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RED 검색)

- 중복성은 'RED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연구시설·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연구시설·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¹⁾	공동 활용 여부 ²⁾	장비 등록 번호 ³⁾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검색된 동일·유사 연구시설·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RED 검색 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 RED 연구장비심의서비스(<http://red.nfec.go.kr>)에서 연구시설·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연구시설·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지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RED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4-01-123456)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p>○ -</p> <p>※ 신청연구시설·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인지 기술</p>
국가전략적 필요성	<p>○ -</p> <p>※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연구시설·장비인지 기술 ※ 신청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연구시설·장비인지 기술</p>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p>○ -</p> <p>※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연구시설·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시설·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연구시설·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연구시설·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연구시설·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연구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RED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p>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p>○ -</p> <p>※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p>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p>○ -</p> <p>※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연구시설·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연구시설·장비 가격, 타 제작사 연구시설·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p>

구 분	내 용					
연구시설·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연구시설· 장비수 (신청연구시설·장비 포함)
	<p>○ -</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p> <p>※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연구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p> <p>- 전문기술인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서,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p> <p>-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p> <p>① 단순히 연구시설·장비 구매, 연구시설·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p> <p>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p> <p>③ 연구자 중 연구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p> <p>④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연구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p> <p>-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p> <p>※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p> <p>※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 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p> <p>※ 연구과제(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p>					

첨부7 마일스톤(Milestone) 목표

- ※ 과제별 마일스톤은 TRL 단계별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일스톤에 대한 정성·정량적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해당 RFP 및 공고안내서 붙임4 참고)
- ※ 과제 선정이후 단계, 최종평가에서 연차별 마일스톤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목표 미달성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 연구자 제시 마일스톤 달성여부는 과제 종료후 최종평가지 “최소요구성과”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1)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수행기간시작일, 종료일의 날짜 형식은 0000.00.00과 같이 기재
- 수행기간은 분기별 또는 월별 또는 주간별로 작성 가능

번호	TRL단계	마일스톤 명	수행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00.00.00	2000.00.00
2			2000.00.00	2000.00.00
3				
..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주요결과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동물모델 개발, 세포주 모델개발, biomarker 개발, assay법 개발, 생체시료 확보, 선도물질 도출, 후보물질 도출, 기술이전, 특허 개발, 관련 논문 발표, 전임상 진입, 시제품 제작, 효능·안전성 평가 등
- 점검항목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0000.00.00과 같이 기재

TRL 단계	
번호 1	마일스톤명
종료예정일	2000.00.00
결과물	마일스톤 목표(100자 이내)
구체적 달성방안	
점검기준	점검기준1(100자 이내)
점검방법	점검방법1(100자 이내)

(2) 2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 1차년도 마일스톤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별 각각 작성하여 제출(사업별 RFP를 참고하여 제출)

기관장 지원 약속서	
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p>본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있어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구축하고, 안전하게 의료데이터가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2025년 00월 00일</p> <p style="margin-top: 20px;"> 연구책임자 : ○ ○ ○ 연구개발기관명 : ○ ○ ○ ○ ○ 연구개발기관장 : ○ ○ ○ (직인) </p> <p style="margin-top: 20px; text-align: center;">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p>	

별첨

등록·기탁 대상 구분 및 전담기관, 보건복지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 각 연구개발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등록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등록

< 분야별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

구분	대상	전담기관	범위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aper.kisti.re.kr)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
	특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ripis.or.kr)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rms.kisti.re.kr)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www.zeus.go.kr)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ntb.kr)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www.biodata.kr 또는 www.kobis.re.kr)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질체 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www.cros.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술상세정보, www.swbank.kr)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한국표준협회 (www.rndstandard.or.kr)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rnd.tta.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 eshop.kriss.re.kr) (참조, www.srd.re.kr)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biorp.kibb.re.kr)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www.chembank.org)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국립농업과학원 (genebank.rda.go.kr)	생물자원 중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 보건복지부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 >

책임기관	기탁등록보존기관
·질병관리청 바이오뱅크과(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국가병원체자원은행)	·질병관리청 산하 25개소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지정 경북대병원 등 17개소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8개소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20-107호, 2021.1.1. 제정)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 **비임상/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과제는 필수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합당한 근거 필수 작성)**

1.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차이를 검토하였는가?
 검토하였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검토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이유 제시한 후 5번으로 이동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2.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이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성/젠더 균형 혹은 특성을 고려할 계획인가?
 고려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고려하려 하였으나 여건상 고려하지 못함 → 이유 제시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3. 연구수행과 결과 도출, 논문 발표 과정에서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인가?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4. 연구결과 활용방안을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인가?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5. 연구팀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성/젠더 특성 차이를 고려하는 원리와 방법을 교육받았는가?
 교육받았음
 교육받을 예정임
 여건상 교육받지 못함
 계획 없음
6. 연구팀의 구성 시 연구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였는가?
 고려하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 공동연구원 수와 그 중 여성연구원 수 기술
 고려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이유 :)
 고려하지 않음 → (근거 :)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12 (외부기술 도입한 경우) 권리관계 증빙자료

첨부13 종괄운영지원 과제 연차별 추진계획

- ※ 연차별 추진계획은 연차별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추진 계획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과제 선정이후 단계, 최종평가에서 연차별 추진계획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목표 미달성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 연차별 추진계획의 달성여부는 과제 종료후 최종평가지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1) 1차년도 수행체계 및 수행계획

① 수행체계

-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수행기간 시작일, 종료일의 날짜 형식은 0000.00.00과 같이 기재
- 수행기간은 분기별 또는 월별 또는 주간별로 작성 가능

번호	추진계획	추진내용	수행기간	
			시작일	종료일
1			2000.00.00	2000.00.00
2			2000.00.00	2000.00.00
3				
..				

② 수행계획

- 추진계획 단위로 작성
- 주요결과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점검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0000.00.00과 같이 기재

번호 1	<i>추진계획</i>
종료예정일	<i>2000.00.00</i>
결과물	
구체적 달성방안	
<i>점검방법</i>	<i>점검방법1(100자 이내)</i>

첨부15**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선정이후 수정계획서 작성 시 제출)**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사업명(RFP)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 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국가연구자번호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첨부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첨부)

※ 기업이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제출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첨부(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해당 시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